

도표로 보는 기업과세제도 개편안 Check-point

-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달라지는 기업과세제도

(재정경제부, 2006. 11.)

구 분	현 행	개 선	시행시기
1. 유한책임회사 등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	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 법인의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 <input type="checkbox"/> 주주단계에서 소득세 과세 * 법인의 일종인 유한책임회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추진 중 (금년 내 국회 제출 예정)	<input type="checkbox"/> 유한책임회사제도에 대응하는 과세체계 정비 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사업자 과세제도 정비 <input type="checkbox"/> 상법 개정과 연계하여 파트너쉽과세제도* 도입 검토 * 법인단계에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, 파트너단계에서 소득세만 과세하는 제도	- 2007.1.1. 이후 - 2008.1.1. 이후 예정
2. 연구개발 정 부출연금의 익 금귀속시기 특 례 인정	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개발 지원목적 출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수령시점에서 즉시 과세	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개발 지원목적 출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수령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사용시점에서 사용금액과 상계 (과세이연)	2007.1.1. 이후
3.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의 금불산입 규정 합리화	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(이중과세 조정)하는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지주회사의 차입금이자상당액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부여 (이중과세조정 불허)	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(이중과세 조정)하는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게 대여하고 조달금리 이상을 받는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이와 관련된 차입금이자상당액에 대해서는 세제상 불이익 배제 (이중과세조정 허용)	2007.1.1. 이후
4. 공동광고선	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광고선전비 중 다음 기준에 의	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광고선전비 중 다음 기준에 의	2007.1.1. 이후

전비 규정의 합리적 보완	<p>한 분담금액의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자에 의한 공동사업의 경우 : 출자비율 ○ 그 외의 경우 : 매출액 	<p>한 분담금액의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자에 의한 공동사업의 경우 : 출자비율 ○ 그 외의 경우 : 매출액, 매출원가, 종업원수, 기타 약정에 의한 기준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 적용 - 단, 한번 선택한 기준은 일정기간(예: 5년) 변경 불가 	
5. 장내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시가규정 명확화	<p>□ 장내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시가평가방법에 대한 규정 없음</p>	<p>□ 장내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시가평가방법을 명확히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거래일 현재 거래소 종가에 의해 평가 - 상증법상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함. 	<p>2007.1.1. 이후</p>
6.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시가에 대해 일정 범위 인정	<p>□ 특수관계자간에 ‘거래가’와 ‘시가’간에 차이가 있는 거래를 한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	<p>□ 특수관계자간에 ‘거래가’와 ‘시가’의 차이가 ‘시가의 5%’와 ‘3억원’ 중 적은 금액보다 작은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제외 	<p>2007.1.1. 이후</p>
7.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 합리화	<p>□ 특수관계자간에 저리의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 이자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원칙) -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(현재 9%) ○ (예외) -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(예: 12%)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당해 차입이자율(12%) -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가중 	<p>□ 특수관계자간에 저리의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 이자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원칙) - 가중평균차입이자율(단, 특수관계자간 차입금은 제외) ○ (예외) - 당좌대출이자율(차입금이 없거나, 특수관계자간 차입금만 있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) 	<p>2007.1.1. 이후</p>

	<p>평균차입이자율(예: 5%)이상으로 대여한 경우 당해 대여이자율(예: 7%)</p>		
<p>8.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 화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범용성 없는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운용리스로 구분 * 기업회계기준 : 금융리스로 구분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D/A이자 및 Shipper's Usance이자 를 자산취득가액으로 처리 * 기업회계기준 : 지급이자(당기비용)로 처리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작업진행을 계산방법 : 원가법만 인정 * 기업회계기준 : 원가법, 산출량기준법, 투입량기준법 인정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범용성 없는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금융리스로 구분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D/A이자 및 Shipper's Usance이자 를 지급이자(당기비용)로 처리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작업진행을 계산방법 - 원가법, 산출량기준법, 투입량기준 법 인정</p>	<p>2007.1.1. 이후</p> <p>2007.1.1. 이후</p> <p>2007.1.1. 이후</p>
<p>9. 접대비 규정 의 합리적 보 완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특정인에게 지출하는 건본품 등 광 고선전비의 경우 접대비로 취급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손비 인정</p> <p>*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광고선전비 :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하여 전액 손 비 인정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소액의 광고선전비(예: 1인당 3만원 한도)의 경우 특정인에게 지출된 금 액의 경우에도 판매부대비용으로 취 급하여 전액 손비 인정</p>	<p>2007.1.1. 이후</p>
<p>10. 외국인투자 가에 대한 경 정청구제도 보 완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과다신고·납부된 세액에 대한 경정 청구권은 거주자·내국법인에게만 인 정 - 비거주자·외국법인에게는 경정청구권 불허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과다 신고·납부된 세액의 경정청구 권을 비거주자·외국법인에게도 인정</p>	<p>2007.1.1. 이후</p>
<p>11. 외국인투자 에 대한 감면 판정 절차 개 선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투자기업의 고도기술수반사 업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절차</p> <p>○ 재경부에 조세감면 신청 → 재경부는 기술소관부처 검토요청 → 소관부처는 재경부에 의견통보 → 재경부가 조세감면여부 결정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투자기업의 고도기술수반사 업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절차</p> <p>○ 재경부에 조세감면 신청 → 재경부는 기술소관부처 검토요청 → 소관부처는 재경부에 의견통보 → 부정적 의견인 경우 민원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, 소관부처에</p>	<p>2007.1.1. 이후</p>

		<p>재검토 요청</p> <p>→ 소관부처는 재정부에 재검토의견 통보</p> <p>→ 재정부가 조세감면여부 결정</p>	
12. 과세전적부 심사제도의 합 리적 개선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경우 : 도달주의 적용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전적부심사의 법정 결정기간을 초과하여 지연결정하는 경우</p> <p>○ 지연결정기간에 대해서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경우 : 발송주의 적용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전적부심사의 법정 결정기간을 초과하여 지연결정하는 경우</p> <p>○ 지연결정기간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50% 경감</p>	2007.1.1. 이후
13. 국세환급절 차 개선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세환급금 지급방법</p> <p>○ 계좌환급 : 본인의 신고계좌가 있 는 경우 계좌로 입금</p> <p>○ 현금지급 : 본인 및 위임 대리인 임을 확인 후 지급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세환급금은 가급적 본인의 신고 계좌로 지급(계좌환급)하도록 유도</p> <p>○ 과세표준신고서에 본인의 환급계 좌 기재</p> <p>○ 신고계좌가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 에서 본인계좌를 적극적으로 확인</p>	기시행중
14.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제도 개선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세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가능</p> <p>○ 이 경우 체납자에게 사전통보하지 아니함.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세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체납자에게 사전통보</p>	2007.1.1. 이후
15. 관세 일괄 납부업체에 대 한 관세환급절 차 간소화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 일괄납부업체의 경우 지급보 류된 환급금액을 기간별로 정산하여 그 정산결과를 세관장에게 신고할 의무 부여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세관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정 산처리토록 하여 관세 일괄납부업체 의 정산결과 신고의무 폐지</p>	2007.1.1. 이후
16. 수출 이후 관세추징세액 에 대한 환급 신청기한 합리 화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분에 대해 관세를 환급받는 수 출업자가 원자재 수입시 품목분류 등의 착오로 관세를 과소납부한 후 관세추징을 받는 경우</p> <p>○ 수출신고 수리시점부터 2년 이내 환급신청 가능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분에 대해 관세를 환급받는 수 출업자가 원자재 수입시 품목분류 등의 착오로 관세를 과소납부한 후 관세추징을 받는 경우</p> <p>○ 관세추징시점부터 2년 이내 환급신청 가능</p>	2007.1.1. 이후
17. 부가가치세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공급자 확인의</p>	2007.1.1. 이후

<p>과세체계 및 절차 단순화 합리화</p>	<p>요건으로 공급자 확인의무* 및 매출전표의 5년간 보관의무 부여</p> <p>* 공급자가 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확인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재화·용역 공급후의 매출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해 폐업시 부가가치세 과세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를 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불허</p>	<p>무를 폐지하고 신용카드거래정보를 ERP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보관의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재화·용역 공급후의 매출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해 폐업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를 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</p>	
<p>18. e-세정 구축을 통한 납세편의 제고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이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먼저 등록할 필요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정기신고(과세표준신고)를 제외한 월별 조기환급, 수정신고, 경정청구 등은 시스템 미비로 전자신고 불가능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등록절차를 생략하고, 국세청이 직접 법무부(출입국관리사무소)의 외국인 등록자료를 제출받아 국세통합전산망 구축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월별 조기환급, 수정신고, 경정청구 등에 대해서도 전자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</p>	<p>2007.3.1. 이후</p> <p>- 조기환급 (기시행중)</p> <p>- 그 외 (2008.1.1.이후)</p>
<p>19. 서식 간소화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세무서식이 복잡·난해하다는 지적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서식간소화T/F를 구성하여 각종 서식 간소화 추진</p>	<p>2008.1.1.이후</p>
<p>20. 수입화물 처리시간의 표준편차 단축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별 수입신고건별로 통관소요시간의 편차가 큰 편이어서 수입업체의 예측가능성 저해</p> <p>* 수입화물 처리시간의 표준편차: 13.2일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6시그마 등 통계기법을 활용하고, 입항부터 반출까지 화물처리시간을 세분화하여 물류단계별로 지체요소를 파악함으로써 표준편차 단축 노력(목표 : 13.2일 ⇒ 7.7일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「물류사전에측시스템」을 구축하여</p>	<p>기시행중</p>

		<p>수입화물 예정처리정보를 제공함*으로써 수입업체의 예측가능성 제고</p> <p>* 품목별·도착항별·세관별·보세구역별로 수입화물처리시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제공</p>	
<p>21. 수입화물 통관절차 간소 화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상 검사율이 높고, 적발율이 낮다는 지적</p> <p>* 2005년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율은 5% 수준, 적발율은 37% 수준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고위험물품의 검사비율 축소와 적발율 제고를 위해 Rule-Base에 기반한 우범기준 개발시스템을 구축</p>	<p>기시행중</p>